

광주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가단508630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재

피고 1. 주식회사 A

2.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4.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숙

5.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은숙

변론 종결 2021. 9. 28.

판결 선고 2021. 11. 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D은 연대하여 251,513,824원 및 그 중 250,048,135원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4. 22.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 D은 연대하여 164,629,484원 및 그 중 162,011,476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5. 4.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D은 연대하여 173,912,257원 및 그 중 172,743,086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2020. 4. 8.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피고 E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2018. 7.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15,274,0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115,274,0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2012. 9. 26. 위 피고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원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그 후 1억 6,150만 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3. 9. 25.까지(그 후 2019. 9. 20.까지 연장됨)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2013. 4. 4. 위 피고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억 원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그 후 8,500만 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4. 4. 3.까지(그 후 2020. 3. 27.까지 연장됨)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위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은 위 피고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3. 피고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위 피고회사가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원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그 후 1억 6,150만 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7. 9. 12.까지(그 후 2019. 9. 11.까지 연장됨)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은 위 피고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위 피고회사가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2억 원과 관련하여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그 후 1억 7,000만 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7. 9. 12.까지(그 후 2019. 11. 29.까지 연장됨)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D은 위 피고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앞서 본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위 피고회사들은, ①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뿐만 아니라, 위 피고회사들이 주채무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H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등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 ② 보증기한이 지났음에도 보증채무를 소멸시키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한의 익일부터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보증원금에 대하여 연 1.7%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비용 등 대지급금으로 지출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대위변제 당일부터 기산되는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6. 7.경 광주 서구 I 소재 상가 J호 내지 K호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나, 2018년경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되었고, 2019. 2.경 임대인의 인도집행으로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다.

바. 그 후 원고는 F은행 및 G은행으로부터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9. 12. 31.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원리금 합계 250,048,135원을, 2019. 10. 25. 피고 B의 위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원리금 합계 162,011,476원을, 2020. 2. 26. 피고 C의 위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원리금 합계 172,743,08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 A와 관련한 위약금(위 2012. 9. 26.자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것)은 759,710원, 대지급금은 705,979원이고, 피고 B와 관련한 위약금은 323,440원, 대지급금은 2,294,568원이며, 피고 C와 관련한 위약금은 696,760원, 대지급금은 472,411원이다.

사. 한편 피고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E과, 2018. 7. 26. 자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99/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9.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9. 1. 25. 위 부동산 중 나머지 1/10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29.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1. 30. 채권최고액 2억 8,560만 원, 채무자 피고 D으로 한 L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2016. 3. 3.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A으로 한 G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가 2018. 12.경 해지를 이유로 모두 말소되었다.

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7. 26. 현재 364,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28.과 가까운 2021. 8. 19. 현재 444,000,000원이며, 앞서 본 L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2018. 7. 26. 현재 225,928,600원이고, G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위 2018. 7. 26. 현재 1억 원이다. 자. 피고 D은 2019. 12. 24. 광주지방법원 2019하단1572 파산선고, 2019하면1572 면책 사건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후인 2020. 4. 3.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소송수계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20. 12. 28. 위

피고에 대한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 및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졌고, 위 파산절차 폐지 결정은 확정되었으나, 위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피고 D이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재판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에 대한 시가감정축탁 결과, 이 법원의 G은행 경양로지점 및 L은행 N금융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연대하여 251,513,824원(위 대위변제금 250,048,135원 + 위약금 759,710원 + 대지급금 705,979원) 및 그 중 위 250,048,13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2. 31.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4. 2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주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연대하여 164,629,484원(위 대위변제금 162,011,476원 + 위약금 323,440원 + 대지급금 2,294,568원) 및 그 중 위 162,011,47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0. 25.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5. 4.까지는 위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주채무자인 피고 C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D은 연대하여 173,912,257원(위 대위변제금 172,743,086원 + 위약금 696,760원 + 대지급금 472,411원) 및 그 중 위 172,743,08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2. 26.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20. 4. 8.까지는 위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E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8. 7. 26. 또는 그 후의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1. 25. 무렵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 D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 17. 제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권리의 존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앞서 본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그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 D이 운영하던 피고 B는 2018년경부터 영업장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임차보증금이 전액 공제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2.경 임대인의 인도집행으로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어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D의 재정상태 및 체결 경위 등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및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위 계약 체결 경위 등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D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처분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D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무 살피건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며,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처분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이때 그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위 부동산 가액에서 위 증여계약 당시의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9. 28. 당시의 가액은 앞서 본 2021. 8. 19. 현재의 가액인 444,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25,928,600원(L은행 225,928,600원 + G은행 1억 원)이므로, 결국 원고는 116,890,686원[439,560,000원(위 444,000,000원 x 증여의 대상이 된 지분 99/100) - 322,669,314원(위 325,928,600원 x 위 지분 비율인 99/100)]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 및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115,274,09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115,274,0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찬우

별지